

『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징수·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법률 14474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위·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종전 제7조(채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를 제정되는 「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징수·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2017. 3. 28. 시행)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